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구 미 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에서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특화사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고도화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출연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2) 출연금액 : 11.6억원

(3)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재정법(제18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19조),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조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나. 주요 사업

(1) 원활한 기업지원을 위한 장비 및 시설운영비 : 500백만원

-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저렴한 장비 이용수가로 적자발생
- 지역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타기관보다 저렴한 시설 임대료 책정

(2) 정책연구소 예산지원액 : 450백만원

- 지역 미래먹거리 신규사업 기획, 지역산업 구조재편 대응로드맵 수립, 산업·정책·경제동향 종합정보제공, 구미기업부설연구소 운영 활성화

(3) 독일 통상협력사무소 예산지원액 : 210백만원

-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해외박람회 지원, 국제협력 및 교류 업무 증진

다. 출연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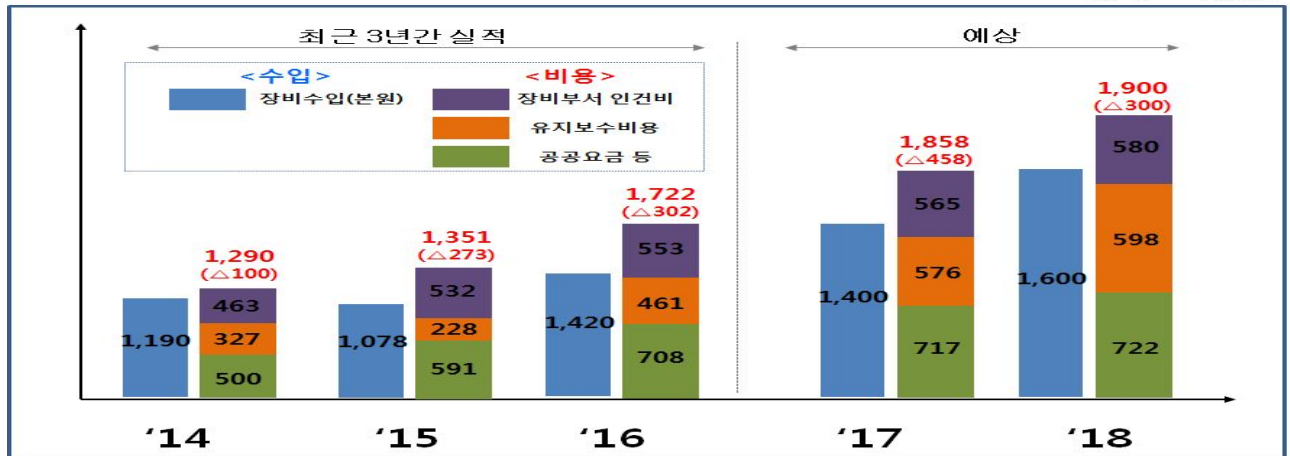
(1) 시험·분석 및 인증서비스를 신규·확대 지원하고 수준 높은 기술 분석 지원을 위한 장비 성능개선 및 업그레이드 등 장비 운영비 필요

- 저렴한 이용료(8~79% 수준) 책정으로 이용기업수 증가에 따라 인건비 외 유지보수비 및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도 상승하므로 적자발생 구조 봉착

- 운영지원이 없을 경우, 장비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지역 기업 부담가중 및 경쟁력 약화 우려
- 지역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장비 업그레이드 및 소모품 교체 등 유지보수비용 필요

<장비수입과 운영비>

(단위 : 백만원)



※ 이용기업수 : (15년) 599社, (16년) 642社, (17년) 700社

(2) 창업 및 성장보육 지원을 위한 임대시설에 대하여 시설 노후에 따른 영선유지와 저렴한 임대료 지원을 위한 운영경비 지원 필요

- 시설임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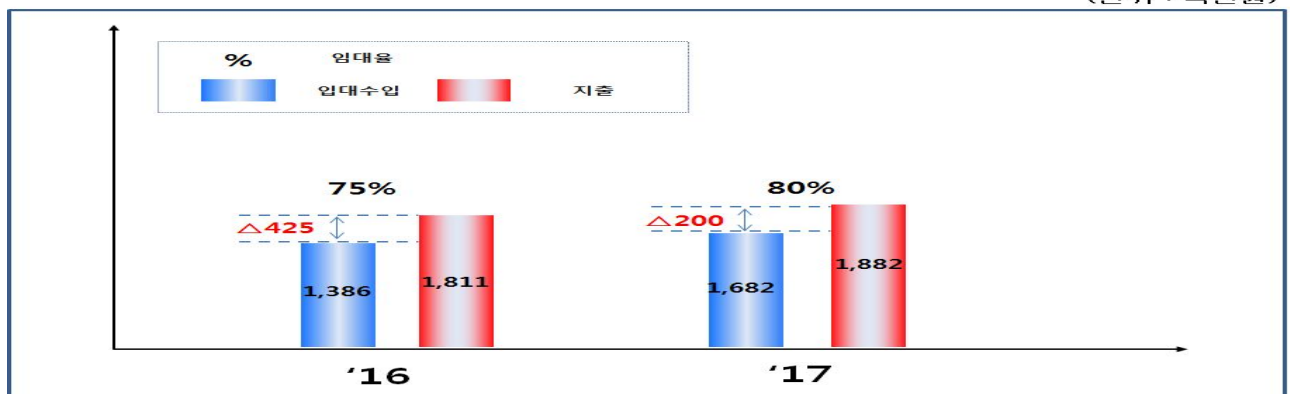
- 임대건물 : 혁신관, 성장관, 이노플라자 등 총 8개동
- 입주율 및 기업수 : 75%, 101개사(300여명) 입주
- 임대수입 : 연 1,682백만원

- 기관의 시설운영비 부담 증가

- 저렴한 임대료 책정에 따라 임대수입 전액을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운영비로 사용하여도 건물 노후화로 환경개선에 따라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임

<시설임대수입과 지출>

(단위 : 백만원)



(3) 구미시 미래먹거리 사업 기획·발굴 및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과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소 운영 지원 필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지역 산업·경제분야 대응전략 마련
- 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경제정책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정책연구
- 산학연관 혁신 주체간 연계협력을 위한 지식허브기능 강화

-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13.3.21조직개편, 4월 발족)
- 인력 : 6명(소장 1, 선임연구원 4, 행정원 1)

-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 미래먹거리 대형사업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
 - ※ 국정운영 5개년 계획반영(미래 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 융합 밸리 조성), 기 추진사업(국방CT 생태계 조성사업, 경북 글로벌 스마트밸리 지원센터 구축사업, 고순도 공업용수 플랜트 조성사업)
- 국내외 유망기술·산업 동향분석, 지역경제 현안 이슈 분석
 - ※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기술·산업·정책 동향 분석 제공 (GERIYA ISSUE 2회, 구미 ISSUE&FOCUS 및 Brief 15회, 산업 동향분석보고서 1건)
-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로드맵 수립
 - ※ 구미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 중
- 지역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 구성·운영
 - ※ 미래부 ICT R&D 바우처사업 과제선정(2건, 국비 10억)

(4) 독일 통상협력사무소 업무추진을 통해 구미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해외 일자리 창출, 국제협력 및 교류 등을 위한 지원 필요

- 추진방향

- 독일, EU지역을 중심으로 구미 투자유치 홍보 및 통상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및 직업훈련을 위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추진
- 관공서, 한인회, 독일 주재 지·상사 등과 협조하여 주재지역과 교류 및 협력 추진
- 볼프스부르크시, 볼프스부르크AG, 브라운슈바이크시 등과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모색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업지원업무 추진
 -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시장조사, 마케팅 등)
 - 해외박람회 지원 사업(기업정보, 통역, 바이어상담 지원 등)
 - 해외 지·상사 업무 수행(수출기업 현지업무 대행 등)
- 해외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 AWO, 디아코니 등 독일 내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해외청년일자리 창출
 - 현지 수공업협회 등과 연계한 직업훈련 교환학생 프로그램 진행
- 국제협력 및 교류 업무 추진
 - 볼프스부르크시 및 우호도시와 교류협력 행사 추진
 - 독일내 기업(연구소) 대상 구미시 투자유치 설명회 추진

- 신성장 사업개발 및 육성 지원
 -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지원 관련 컨설팅 지원 등 추진
 -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CFK-Valley와 교류협력 확대
 - 신산업 육성을 위한 독일 내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 등 관련 연구소 연계활동 추진
- 기타 업무
 - 독일 내 경제인, 경제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교류협력 증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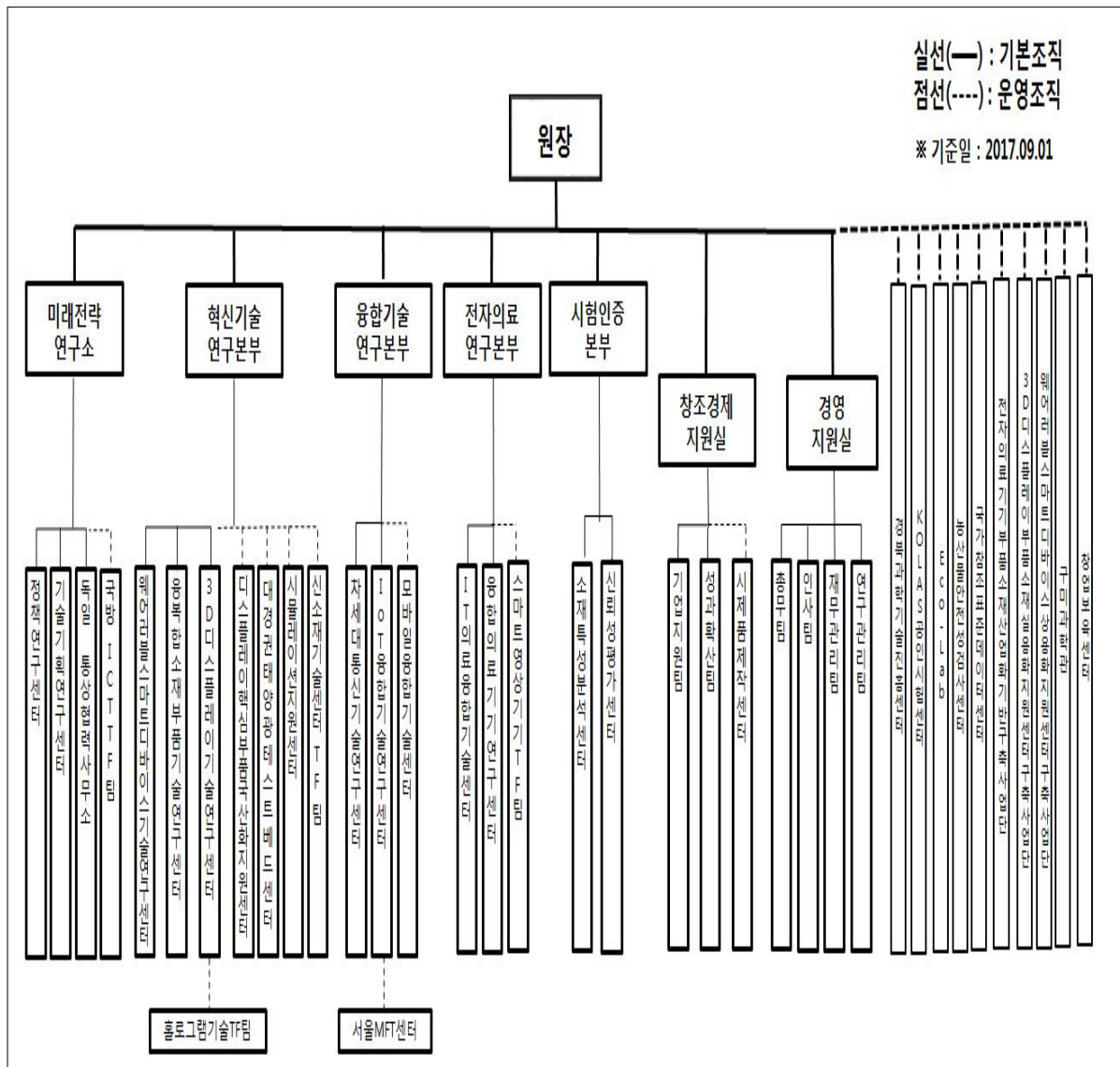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현황

①기관명(주소)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주소)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②기관소개	○ 지역 특화사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를 달성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		
③설립근거	○ 법 률 : 민법 제32조 ○ 규 칙 :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조 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④연 혁	○ 설립일자 : 2007. 7. 30 ○ 기관명칭 변경 : 해당없음	⑤관계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⑥주요기능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산·학·연·관 지역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협력거점 구축 ○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및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 지역 전자정보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및 집행 ○ 제품의 규격·성능시험·품질평가 및 품질인증사업 등		
⑦기관장 소개	○ 성 명 : 남유진 ○ 학 력 : 금오공과대학교(경영학) 박사 ○ 경 력 : 대통령비서실 국장, 구미시 부시장 (現)구미시장		
⑧조 직 기구도	*별첨 참고		
⑨공시책임자	○ (담당자)(소속) 총무팀 (직책·성명) 선임 윤홍근 (전화) 054)479-2019 ○ (확인자)(소속) 총무팀 (직책·성명) 팀장 정연욱 (전화) 054)479-2013		

[별첨]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조직기구도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
 7. 디자인·브랜드·표준 관련 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비즈니스 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삭제 <2013.3.23.>
 11.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13.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 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재원의 조달)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

소관 실 · 과		과학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남 동 수
	담 당	안 경 우
	담 당 자	강 주 희 (480-6152)